

경인 아라뱃길 푸드트럭 특화존 영업자 모집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경인 아라뱃길 푸드트럭 특화존 영업자 모집

나. 모집규모 : 총 4대 (특화존(별말교) 푸드트럭 4대)

- 응모기준 : 4명이 팀을 구성하여 입찰 (개인 및 4명 미만의 팀 신청 시 부적격 처리)

※ 금번 입찰공고는 특화존 영업자 모집공고로서, 개인은 일반존에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영업장소

특화존	장 소	위 치	설치 대수	예정가격(원) (VAT포함)	비 고
별말교	별말교 ③~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35-1, 34-8, 23-12	4	5,192,000 (1,298,000/대)	24개월 사용료

* 푸드트럭의 세부 위치는 붙임 평면도 참고

라. 허가면적 : 15㎡(1대당 면적 기준)

마. 업 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주류판매 불가)

2.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계약연장은 불가)

가. 하절기(3월~10월) : 10:00 ~ 22:00 / 동절기(11월~2월) : 10:00 ~ 20:00

나.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실제 입점은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후 허용됩니다.

3. 응모자격 (팀원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29세 이하인 자로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여 급여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 대상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취업애로 청년(이하 “청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나.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

※ 팀원 중 1명이라도 신청자격 미 충족시 서류전형 탈락조치 (추후 적발 시 팀 전체 계약해지)

4.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기 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2016년 6월 7일(화) 17:00 까지

나. 접수처 : 아라뱃길관리처 문화관광팀 김주인 과장(☎ 032-590-2252)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경인 아라뱃길 통합청사 3층 문화관광팀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푸드트럭(특화존) 영업희망 신청서 1부 (붙임1)
 - * 신청서는 누락사항 없이 빠짐없이 기재
- 사업제안서 7부
- 가격입찰서 1부 (붙임2)
- 서약서 1부 (붙임3)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붙임4)
- (팀원전체)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포함된 것에 한함) 사본 1부
- (팀원전체)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무통장입금확인증 또는 인터넷 बैं킹시 입금확인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 (팀원전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각 1부
-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인 참여시)
-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입찰보증금 환불용, 단 보증서 제출자는 제외)

- (팀원전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이력확인서 등)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일반존, 특화존 모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입찰신청서 작성 시 입찰 대상을 명확히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까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K-water에 납부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 국민은행 462890-14-802217, 한국수자원공사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일 익일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K-water에 귀속됩니다.

6. 현장설명회 : 미 실시

7. 사업자 선정기준

가.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 '16. 06. 08(수)

나. 평가일정

- 사업제안서 평가 : '16. 06. 09(목)

- 가격개찰 : '16. 06. 10(금) 10:00~10:30

※ 개찰장소 : 경인아라뱃길사업본부 3층 대회의실

- 계약대상자결정 : '16. 06. 10(금)

※ 「아라뱃길 홈페이지(www.giwaterway.kr)-공지사항」 에 결과 게시

다. 평가세부기준

- 사업제안서 작성 시 특화존 구성메뉴는 ①간편식사·면류, ②분식류, ③디저트류, ④음료류 중에서 선택하되 특화존 컨셉에 맞는 메뉴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메뉴
①간이식사·면류	제과, 제빵,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국수, 중식류(짜장, 짬뽕 등), 소바(우동), 컵밥, 떡 등
②분식류	떡볶이, 라면, 오뎅, 튀김류(감자, 새우 등), 오징어, 꼬치류, 치킨류, 옥수수, 호두과자, 군방, 계란빵, 핫바 등
③디저트류	아이스크림류, 핑크푸드, 콘, 과자류, 쿠키, 츄러스 등
④음료류	커피, 과일주스, 에이드, 다류(茶類), 탄산수, 생수, 각종 음료수 등
⑤기타	① ~ ④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예) 퓨전음식 등

- 제시된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참가자 중 입찰가격 점수(30점)와 사업제안서 평가점수 (70점)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 * 기준 예정가격 미만 제시 입찰참가 시 무효입찰 처리
 - * 입찰안내서의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 서비스 제공 순의 고득점순위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적격자중 차순위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업종 및 메뉴를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팀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추후 적발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는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특화존 전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팀의 구성원과 개별적 체결할 예정이며 개인별 계약금액은 제출한 가격입찰서 금액의 1/N입니다.

8. 사용수익 허가

- 가. 사용허가 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사용허가는 취소되며 사용허가권리는 차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9. 사용료의 납부

가. 1차 연도 사용료는 사용허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연납으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나. 사용(계약)보증금 : 연간 사용료의 5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 전 일시납부하며, 사용허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자 없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곳, 1세대 1인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회 공고된 영업장소에 대하여도 1인 1곳,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특화존 모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적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 라 한다)는 푸드트럭 영업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인은 푸드트럭 영업 존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마. 사용인이 사용 목적을 아라뱃길관리처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아라뱃길관리처 푸드트럭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포기해야 합니다.

- 사.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라뱃길관리처 문화관광팀 김주인 과장(☎ 032-590-22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17.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본부장

가 격 입 찰 서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본부장 귀하

건 명 : 경인 아라뱃길 푸드트럭 특화존(별말교) 영업자 모집

□ 별말교 ③~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35-1, 34-8, 23-12)

입찰금액 : 일금 _____ 원정(₩ _____)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입할 것

본인은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푸드트럭 운영허가 계약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팀 명 :

신 청 인 : 팀원1 (인)(인감도장)

팀원2 (인)

팀원3 (인)

팀원4 (인)

■ 작성요령

- 가격표시는 국문 및 아라비아 숫자 표시(상이한 경우 국문우선)
- 입찰금액은 특화존의 2년간 총 사용료 금액을 기입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예정가격 미만 제시 입찰참가자는 무효처리
- 예정가격 (별말교:5,192,000원)
- 낙찰자로 선정된 후 개인별 계약체결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은 제출한 입찰금액의 1/N 금액으로 체결 예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표기

■ 제출방법

- 입찰유의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
- 입찰금액은 작성 후 투명테이프 부착
- 신청인의 인감은 신청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이어야 함
- 별도의 봉투에 밀봉한 후 접지부분에 신청인(구성원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 관계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본 사용허가 계약체결 및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을 것이며,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의 감수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팀 명 :

신 청 인 : 팀원1	(인)(인감도장)
팀원2	(인)
팀원3	(인)
팀원4	(인)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본부장 귀하

첨부1

아라뱃길 푸드트럭 특화ZONE 사용허가 계약서

푸드트럭 ZONE의 표시 : (푸드트럭 위치 기재)

소재지	면 적 (㎡)	업 종	비고
	15		

위 표시 푸드트럭 특화ZONE(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이하 “K-water”라 한다)와 사용인 ○○○(이하 “사용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

- ① K-water는 목적물을 “사용인”에게 사용 허가한다.
- ② “사용인”은 목적물을 푸드트럭 영업 용도로 사용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계약기간)

- ① 사용허가 기간은 2016년 0월 00일부터 2018년 0월 00일까지로 한다.
- ② 영업시간은 하절기(3월~10월) 10시부터 22시, 동절기(11월~2월)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 ③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인”은 6개월 전, K-water는 2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다. 다만,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사용료 및 사용보증금)

- ① 연간 사용료는 金 ○○원정(₩00,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사용인”은 매년 0월 00일까지 연사용료를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1회차

- 년도 사용료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허가기간 도중에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K-water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 ③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인”은 미납 사용료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사용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50%를 사용허가 개시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반납 이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사용인”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증여, 대물변제, 대여 등)하거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제5조(보험)

“사용인”은 화재 등 사고발생으로 인한 상호 재산(K-water에서 유지관리 중인 아라천 시설 등 포함)의 보호와 배상책임 등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인” 소유의 푸드트럭, 집기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후 K-water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인허가)

- ① “사용인”은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K-water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아라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영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영업 개시 전 K-water에게 제출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벌금 및 과태료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며, 하천관리청의 의견에 따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독점적 영업권 미보장)

K-water는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9조(시설물의 설치)

- ① K-water는 목적물에 “사용인”의 영업 구역임을 표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식 푸드트럭 ZONE 영업자임을 공지한다.
- ② “사용인”은 목적물 내 이동식 야외테이블, 간이의자를 설치할 수 없다.
- ③ 전기, 수도 등 영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은 지원되지 않으며, 공중 화장실(수도 포함) 등 공공 인프라를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수선유지)

- ① “사용인”의 영업 행위로 인하여 K-water 관리 시설(수목 포함)이 보완조치 및 수선이 필요할 경우 “사용인”의 부담으로 조치해야 한다.
- ② “사용인”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할 곳을 발견한 경우 K-water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용인”이 수선하는 경우에도 K-water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인”의 의무나 부담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홀히 하여 K-water의 아라천 유지·관리 의무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K-water는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한 후 “사용인”에게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K-water는 제3자에게 수선 또는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보호)

- ① “사용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 인근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기기는 “사용인”이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③ 목적물내의 “사용인”의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용인”의 책임이며, K-water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사용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도난 등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인”의 손해에 대하여 K-water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인의 금지사항)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서양속을 해치는 행위
2. 목적물 외에 명판, 간판 또는 광고물 등을 K-water와 협의없이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3. 1개월 이상 K-water와 합의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
4. 목적물 또는 건물내 기타 장소에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K-water가 인정하는 것 이외의 전열기기, 기타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13조(면책사항)

K-water는 지진, 풍수해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폭동, 기타 법률상·사실상 불가항력적 사유나, 그 밖의 K-water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인” 또는 “사용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목적물이 속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K-water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손해(손해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K-water가 산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사용인”은 즉시 자기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K-water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제1항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사용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K-water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변경)

K-water와 “사용인”은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K-water 또는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인”이 사용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해태한 경우
2. 이 계약에 위배되는 “사용인”의 행위에 대해 K-water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푸드트럭 영업에 관한 제반 법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영업 준속이 어려울 경우
4. “사용인”이 2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단, K-water와 사전 협의 시 예외)
5.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6. 사용인이 K-water의 승인없이 목적물의 변경,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권리의 처분, 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에 시설한 K-water의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K-water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K-water와 “사용인”이 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제1항 제5호 내지 제7항에 의한 해지 사유 발생 시 특화존 전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지로 인해 K-water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K-water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이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사용인”은 이 계약종료일 이전 “사용인”의 점유 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하며 목적물을 K-water의 요구대로 원상복구하여 K-water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K-water는 “사용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 등에 대해 “사용인”의 요청에 따라 “사용인”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계약종료일까지 목적물이 원상복구 및 명도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K-water는 임의로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인”의 사정으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실제로 명도 또는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손해배상금으로 K-water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종료 후에도 “사용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또는 점용할 경우에는 K-water는 “사용인”의 비용으로 강제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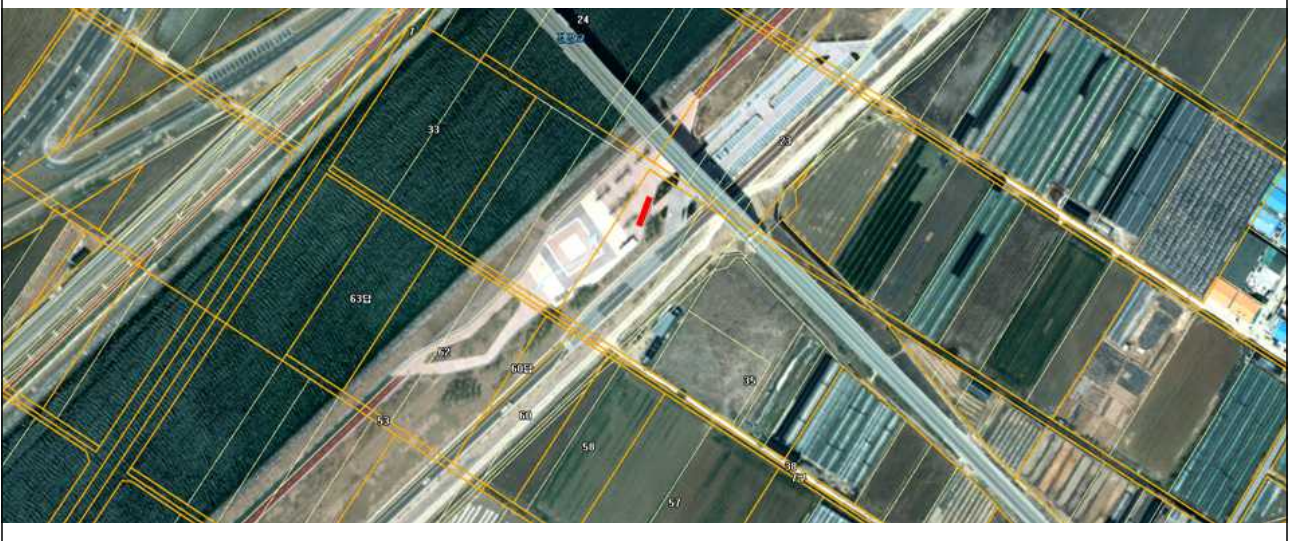
제18조(정보제공)

“사용인”은 아라뱃길 푸드트럭 시범운영자로서 K-water의 푸드트럭 ZONE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첨부1

푸드트럭 영업부지 위치도

①-1. 별말교 ③~④ (1:25,000, 1:3,333)



좌측부터 ③~④

○ 현장사진



1-2. 별말교 ⑤~⑥ (1:25,000, 1:3,333)



좌측부터 ⑤~⑥

○ 현장사진



첨부3

푸드트럭 ZONE 설치와 입점영업 절차

단 계	하천관리청	하천유지관리기관 (K-water)	푸드트럭 영업자	지자체 위생부서
푸드트럭 Zone 설치 (하천 점용허가)	점용허가증 발급 공사실시계획 인가	푸드트럭 Zone 설치·운영계획 수립 (입지선정, 업종선택, 입점차량대수, 운영방안) 하천점용허가 신청 푸드트럭 영업구역 설치		
영업자 선정		입점영업자 모집공고 입점영업자 선정 계 약 입점자격증 발급	응 찰	
영업신고 / 입점허용		푸드트럭 Zone내 입점 허용	영업신고증 신청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푸드트럭 영업 개시	영업신고증 발급
운영관리	하천법 위반단속	입점계약내용 위반단속 등 운영·관리		식품위생법 위반단속